

#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3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기록물 영구보존과 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및 민간기록물 수집·보존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 지속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(안 제1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제외법령

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 
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3. 6. 15.~ 2023. 7. 5.) 결과 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최상미(☎350-5613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7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 회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</u> <u>31일까지</u>로 한다.</p>	<p>제17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7년 12월</u> <u>31일</u>-----</p>

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,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임

4. 작성자

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최상미(02-350-5613)